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 주 택

상지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E-mail : jtkim@sangji.ac.kr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제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색인어> 간이과세, 일반과세, 소액부징수

* 이 논문은 2004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연구년제)지원에 의한 것임

I. 서 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거래세로서 조세의 부담은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자가 부담을 지는 일반소비세이며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세행정력을 절약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제도이다. 간이과세제도는 1억 년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공급대가)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원칙적인 규정인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조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당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율과 납세절차를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1996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명칭만 변경하여 유지시키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현재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장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이과세제도이다.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또한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잔류를 원하기 때문에 매출시켜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여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간이과세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

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부가가치세제도에서 사업자는 장부의 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 신고 및 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회계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그 의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금에 비하여 과대하여 효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와같이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역시 일부 경감해 주기 위한 일종의 편의적 과세제도가 간이과세제도이다(이만우외 2003).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이나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같은 특례규정¹⁾을 두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세무행정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서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이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세율차이로 인한 공평과세의 문제와 또한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기 위한 일부 부도덕한 고소득 사업자들의 위장 휴·폐업의 발생 등 세무행정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간이과세 및 연간 매출액 2,400만원이하의 소액부징수(부가가치세 면제)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25조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도를 적용하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의 추적이 불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의 탈세를 조장하게 되므로 광업·제조업·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여도 다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영국과 독일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프랑스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간이과세제도를 채택하여 간단하게 과세하고 있다.

<표 1> 간이과세 배제업종

구분	간이과세 배제업종
(1)거래단절 방지	① 광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2)부동산투 기억제	④ 부동산매매업 ⑤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과소비억 제	⑥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세원포착 목적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⑧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양복점업·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이다.

(1)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는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하게 되어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표 2>와 같이 6개월동안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 2> 간이과세 계산 구조

구분	내용
(+)매출세액	6개월의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재고납부세액	과세유형변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의 차액
(-)공제세액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차감납부세액	

여기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이란 <표 3>에서와 같이 직전 3년간 신고 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정부가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말하며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비율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

<표 3>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①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20%	20%	20%	20%
②농업,수렵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 업,기타서비스업	20%	22.5%	25%	27.5%	30%
③음식업, 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25%	30%	35%	40%

*소매업의 경우 2007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5%로 한다.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7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30%로 한다.

(2) 간이과세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사업자의 납세현실은 연간매출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영세사업자는 조세관련 인력과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의 기장 등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도입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면세방식과 과세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금계산서의 교부 장부의 기장 세액의 계산 등을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규모사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일반소비세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의무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가 혼란해 질 염려가 있어 소규모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소규모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과세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의 교부, 장부의 기장, 세액의 계산 등을 간편하게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정귀철 2004).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부터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써 과세특례제도를 두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이하(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연간300만

원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2%(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3.5%)를 부가가치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이제도는 1977년 세법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600만원)으로 되었고, 1988년에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연간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996년에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로 분리되었다. 즉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연간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그대로 존속시키고 4,800만원 초과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였다. 2000년 7월1일부터는 기존의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에 포함시키고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에 포함시켜서 과세특례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축소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상)와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800만원이하)만 적용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상품 또는 제품을 사업자에게 매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매출액의 10%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례과세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탈세를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2.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

2004년도 국가에서 징수한 세목별 실적은 부가가치세가 34조5천억원으로 단일 세목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수는 394만명으로 소득세(498만명)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표 4>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총 394만명으로 법인납세자, 일반개인납세자와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총 납세자중 일반개인사업자 48.8%, 간이과세자 41.7%, 법인은 9.4%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수가 감소하여 간이과세자로 이전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과세특례자의 점유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7월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수가 1999년도에 58만명에서 다음연도에 166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 조정되어 일반과세자수도 1999년도 105만명에서 144만명으로 증가되었다.

<표 4>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인원 및 과세표준(단위 : 명)

구분	신고 인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법인		개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95	2,526,113	150,023	5.9	1,103,567	43.7	-	-	1,272,608	50.4
1996	2,580,113	169,512	6.6	926,841	35.9	237,197	10.6	1,210,563	46.9
1997	2,930,116	192,333	6.6	1,004,825	34.3	490,034	16.7	1,242,897	42.4
1998	2,855,369	197,185	6.9	979,285	34.3	546,161	19.1	1,132,738	39.7
1999	2,998,956	232,474	7.7	1,059,109	35.3	586,800	19.6	1,120,573	37.4
2000	3,390,772	278,657	8.2	1,442,987	42.5	1,669,128	49.2	-	-
2001	3,709,035	321,204	8.6	1,573,217	42.4	1,814,614	48.9	-	-
2002	3,963,454	345,292	8.7	1,774,268	44.7	1,843,894	46.5	-	-
2003	3,994,665	359,154	8.9	1,861,707	46.6	1,773,804	44.4	-	-
2004	3,942,247	372,041	9.4	1,924,877	48.8	1,645,329	41.7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년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간이과세자의 순납부세액은 <표 5>에서 나타내고 있다. <표 5>에서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2001년 1.7%, 2002년 1.5%, 2003년 1.3%, 2004년에는 1.1%를 점유하고 있어 간이과세자가 점유하는 비율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추세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순납부세액도 금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점유비율은 겨우 0.3%에 그치고 있다. <표 4>에서 2004년도 간이과세자가 총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7%나 되나 부가가치세로 순 납부세액은 총부가가치세의 0.3%에 해당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부가가치세의 수입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 과세표준과 순납부세액의 변동추이 (단위: 억원, %)

구분	과세표준			순 납부세액*		
	총 과세표준	간이과세자	비율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비율
2001	15,153,891	266,125	1.7	279,376	760	0.2
2002	17,255,021	271,102	1.5	323,103	978	0.3
2003	18,826,686	252,766	1.3	333,495	1,038	0.3
2004	21,280,857	239,832	1.1	341,360	1,142	0.3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의 납부의무 면제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연간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29조). 이러한 소액부징수금액도 1996년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00년 7월1일부터 과세기간별 공급대가를 1천2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표 6>에서 2004년도 제1기 간이과세자수는 164만명인데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는 145만명으로 총 88.2%를 차지하고 간이과세자 중 19만명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납부면세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표 4>와 <표 6>을 유추하면 2004년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394만명이나 이중에서 41.7% 164만명이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 중 88.2%인 145만명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11.8%인 19만명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 수 (단위:명,%)

구분	간이과세자수	납부면세자수		납세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1.1	1,814,614	1,520,540	83.8	294,074	16.2
2002.1	1,843,894	1,538,084	83.4	305,810	16.6
2003.1	1,773,804	1,526,163	86.0	247,641	14.0
2004.1	1,645,329	1,451,154	88.2	194,175	11.8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도로써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을 경정이라 한다²⁾. <표 7>에서 2004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체 경정인원은 44.57%로 그 이전의 과세기간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자의 경정비율은 2003년 제1기부터 61.33%, 67.31%, 63.83% 44.5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정 비율은 2003.2기부터 27.25%, 30.25%, 25.78%로 나타나 간이과세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들의 경정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그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와 정부간의 조세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조세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정후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표 7> 과세기간별 경정현황(단위:백만원,명,%)

구분	간이과세자 경정			일반과세자 경정		
	과세자 수	총 경정*	경정 비율	과세자 수	총 경정*	경정 비율
2001.1	287,128	154,351	53.76	1,469,009	456,703	31.09
2001.2	292,673	145,083	49.58	1,573,217	461,039	29.31
2002.1	300,670	137,620	45.77	1,665,208	431,269	25.90
2002.2	285,840	117,769	41.20	1,774,268	440,151	24.81
2003.1	269,916	165,540	61.33	1,801,107	513,198	28.49
2003.2	243,434	163,849	67.31	1,861,707	507,394	27.25
2004.1	231,037	147,473	63.83	1,894,794	573,265	30.25
2004.2	221,584	98,764	44.57	1,924,877	496,264	25.78

*총 경정 수에는 조사경정과 당연경정을 포함한 것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연도별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변동추이를 <표 8>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2002년 법인사업자의 비율은 5.8%, 6.0%, 6.4%로 증가하고 동기간 일반사업자는 46.9%, 49.5%, 52.9%로 증가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동기간 47.2%, 44.3%, 40.5%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업자의 추이는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뚜렷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폐업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서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간이과세자는 2002년도 신규사업자의 점유비율이 47.2%이나 동년도 폐업자의 비율은 51.8%, 2003년도에는 신규비율이 44.3%, 폐업자 비율은 47.4%, 2004년에는 신규비율이 40.5%, 폐업자 비율은 45.3%로 신규사업자비율보다 폐업자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일반과세자 수의 증가는 398,598인데 간이과세자수의 증가는 170,498이며, 2003년에도 일반과세자의 증가는 85,632이나 간이과세자는 40,222이며, 2004년에도 일반과세자는 100,528이나 증가하였는데 간이과세자의 증가는 단지 27,70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연도별 신규사업자 폐업자 변동추이 (단위:명,%)

구분	신규 사업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계	법인	일반	간이
2002	1,239,370	72,463	581,468	585,439	800,261	31,952	353,368	414,941
	100	5.8	46.9	47.2	100	3.9	44.1	51.8
2003	1,006,779	61,187	499,122	446,470	857,033	41,295	409,490	406,248
	100	6.0	49.5	44.3	100	4.8	47.7	47.4
2004	884,932	57,406	468,309	359,217	731,160	31,868	367,781	331,511
	100	6.4	52.9	40.5	100	4.3	50.3	45.3

연도별 과세유형의 변동추이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2000년 7월에 기존의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000년 에 과세특례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이 1,317,714명이었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278,479명 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과세특례자는 폐지되었다. 2004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은 83,584명이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은 156,418 명이나 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9> 연도별 과세유형변동추이(단위:명)

구분	일반→간이	일반→특례	간이→일반	간이→특례	특례→일반	특례→간이
1999	9,829	9,013	18,483	75,029	9,388	40,864
2000	67,726	-	278,479	-	26,742	1,317,714
2001	35,707	-	95,205	-	-	-
2002	35,262	-	82,956	-	-	-
2003	41,688	-	66,524	-	-	-
2004	83,584	-	156,418	-	-	-

III.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1. 간이과세제도는 탈세의 조장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

그리고 연간매출액이 2,400만원이하의 소액부징수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장부의 기장 등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제도였으며 결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납세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세부담을 경감 또는 탈세하는 장치로 인식되어 간이과세제도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탈세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여 탈세액을 계산하면 연구자에 따라 분석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이규섭(2002)은 GNP대비 적게는 7%에서 많게는 4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일호(1998)는 지하경제규모와 연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를 추정한 결과 총 부가가치세 대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1993년 9.3% 1994년 6.7%로 추정하였다. 현진권(1998)은 전체부가가치세 대비 탈세비율을 17.66%로 추정하여 탈세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의 48.8%가 일반사업자이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41.7%로 전체사업자의 41.7%가 간이과세자이다. 더 큰 문제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안된다며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내지 않겠다고 신고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88.2%에 육박한 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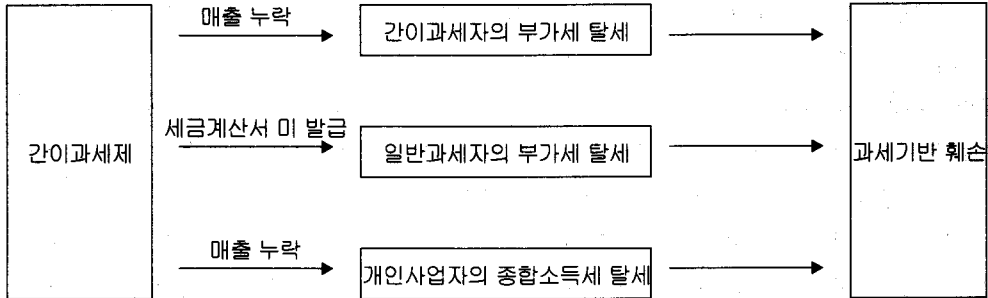
소규모 음식점사업자의 사업장 시설규모 관점에서 보면 사업장규모가 10평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가 1,500만원-3,000만원이 되고 그밖에 주방시설 등의 구입대금을 감안했을 때 1일 평균 매출액이 131,506원(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기준이 년 4,800만원임)에 미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입금액이다(이규섭, 2002).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볼때 연간 4,800만원이 안되는 일부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위장 간이과세자가 되어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함으로써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자료 또는 위장자료 관행을 조장하게 되어 상거래질서를 혼란시킴으로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간이과세 제도는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탈세를 조장한다. 첫째, 간이과세자 본인들이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다.

<그림 1> 간이과세로 인한 탈세유형



둘째, 간이과세자의 매출 누락은 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용이하게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했을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 흐름을 끊기게 함으로써 일반과세자의 탈세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축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부가세 탈세뿐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더 크다.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누락시키면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곧 소득세 탈루로 이어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크지 않는 반면 거래가 노출되어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고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의 가중과 납세절차상의 번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취를 기피하게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의 비현실성과 실제매출규모의 노출을 기피하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간이과세제도의 취지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탈세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과세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2. 세부담의 불공평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평성의 개념은 수직적공평(vertical equity)과 수평적공평(horizontal equity)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직적 공평은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는 공평이며, 수평적 공평은 납세자상호간의 공평을 말한다.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전가 할 수 있고 또한 납세협력비용이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동일하게 나타나 수직적공평의 문제는 없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전가는 불완전하고 일률적이지 못하여 사업자간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표 10>은 2004년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차이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율로 인한 불공평이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율은 운수·창고·통신업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음식업(1.26), 서비스업(1.17)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낮게 나타난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0.68, 숙박업의 순으로 나타나 업종별로 조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업종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와의 수평적 공평성을 비교하였다. 변동계수가 양의 값인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서 운수·창고·통신업(0.2380) 그리고 음식업(0.2063)순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간이과세제도가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이율과 변동계수에 영향을 미치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소매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율(0.97)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이 커지게 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과세자를 기피하고 간이과세자로 안주하려는 강한 유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 실제 부가가치율에 관계없이 법정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납부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국세부과에 있어 지켜야할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각 업종별로 일률적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업종간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극복하지 못하여 업종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표 10> 2004년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①부가가치율	②일반과세자	③간이과세자	④차이율(②/③)	*⑤변동계수
농업·수렵·임업	34.6	3.46	3	1.15	0.1329
전기·가스·수도업	13.6	1.36	2	0.68	-0.4705
소매업	19.5	1.95	2	0.97	-0.0256
건설업	33.4	3.34	3	1.11	0.1017
음식업	50.4	5.04	4	1.26	0.2063
숙박업	34.1	3.41	4	0.85	-0.1730
운수·창고·통신	52.5	5.25	4	1.31	0.2380
서비스업	35.2	3.52	3	1.17	0.1477

* 변동계수(수평적공평성측정)=표준편차(일반과세자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 업종별부가가치율)/평균(일반과세자부가가치율)

자료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3. 소액부징수제도

소액부징수제도는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연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그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2004년도 제1기 간이과세자수는 약 164만 명이나 이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11.8%이며 나머지 88.2%인 145만명은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 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도 제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 효과도 없이 행정의 혼란 만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납세면제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고 있다. 또한 소액부징수대상금액이 높게 설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된 후에도 납세면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 기 위하여 매출액의 축소신고, 세금계산서의 수취의 거부, 무기장 등으로 사회 전반적인 납세의식을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본적인 운영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부가가치세는 근거과세를 위하여 사업자간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금액의 노출로 인해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양성화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고 간이과세자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하게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의 혜택이나 그 편익이 크지 않을뿐더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거래가 노출되고 외형금액의 증가는 소득금액의 증가로 연결되어 소득세

등 세 부담이 높아지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납세절차상의 복잡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이와같이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제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무가 없으므로써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동헌·지용우 2002).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 부담이 되는 간이과세유형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과세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IV. 간이과세제도의 검토방안

1.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 사업자는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와 납부, 징수와 환급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장부기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대한 예외적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조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해치고 있어 간이과세를 폐지하여야 한다(서희열·김승철 1997).

첫째, 간이과세자는 본래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세 부담 경감취지로 인식되어 간이과세자들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의 조장, 세금계산서 수수기피로 인한 상거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과세를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서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제도의 더 큰 문제는 간이과세자 자신에 그치지 않고 일반사업자, 심지어 대기업에까지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어 사업자 전반의 과세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부가가치세제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수 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받는 것도 강제하지 않아, 외형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오히려 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거래를 해도 흔적이 없는 간이과세 제도는 조세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과세 인프라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유지하고는 조세개혁 작업은 불가능하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비현실적이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되어 왔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을 정치적인 논리로 상향조정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만 양산되고 있다.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세무 편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탈세를 용인해주는 제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넷째,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하여 건전한 납세의무의 성실신고 제도의 확립이다. 부가가치세가 합리적이고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여도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자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에서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실질 소득에 따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장기적인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고 일반과세(법인과 개인사업자)와 현행과 같이 연간 2천400만원 이하인 소액부징수의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에서 2004년도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19만명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일반과세자와 소액부징수자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1> 부가가치세제도 개선후 과세유형별 사업자의 구성

구분	현행			개선
총 사업자 (394만명)	일반과세자 (229만명)	법인(37만명)	-->	법인(37만명)
		개인(192만명)		개인(211만명)
	간이과세자(19만명)		폐지	
	소액부징수자(146만명)		매출액 연간 2,400만원이하	소액부징수 (146만명)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도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권오성 2005).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에 우선 간이과세자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대체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해 간이과세자를 점차 줄여나가며 간이과세자 폐지에 앞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간이과세자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과세표준 양성화 추이에 따라 간이과세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면서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은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간이과세제도 폐지방안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현재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 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고 이는 실제 과세표준 보다 낮게 합법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평균부가가치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게 되면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실제 매출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출과 매입을 함께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 스스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안종범 2000).

간이과세자를 완전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동일한 세율과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수수하여야 하므로 근거과세를 구현할 수 있다.

2. 일반과세로 전환시 보완책

간이과세를 단계적으로 완전폐지 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매출 누락을 방지하여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동일한 세율과 과세방법을 적용하게 되어 사업자간의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어 선진화된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11>에서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394만명에 이르나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58%에 불과하며 나머지 41%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13>에서 간이과세자 160만명 중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액부징수자(납부면제자수)가 88.2%인 145만명을 차지하고 실지로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는 단지 11.8%인 194천명에 불과하다.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11.8%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일시적인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서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 또는 다음 단계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 증가가 나타나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 등 일반과세자로 정착될 때 까지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나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급격한 조세부담은 부가가치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유통과정만 투명하여 진다면 사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이외에는 조세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대상 금액을 높게 설정됨에 따라 소액부징수자로 남아 있기 위해 세금계산서수취를 거부하는 등 매출액을 줄이는 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부가가치제도의 근본적인 운영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박상근 2000).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 2,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수가 많고 공급대가가 아직도 많이 누락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일반과세로 전환시 기대효과

(1) 조세부담의 공평성확립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나 능력이 같으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납세자들은 세금부담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과세유형간의 조세부담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제도가 조세부담

을 경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세금계산서누락, 위장 휴·폐업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시에는 조세부담의 공정성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면제되므로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이과세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과세자료 수집과 과세표준현실화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근거과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탈세의 방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자신들의 매출누락을 과소 신고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도 누락시키는 결과가 되며 또한 부가가치세외에 소득세에 대한 탈세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여러 방면에서 탈세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제도는 탈세의 온상으로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근거과세에 의한 공평과세와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V. 요약 및 결론

현행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에게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면제 등 일반과세자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세납부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게 조세부담의 경감으로 잘못 알고 계속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존재하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로 이어지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상거래질서를 혼란하게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가져오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금액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오히려 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거래를 하여도 흔적이 없는 지금의 간이과세제도는 조세의

불랙홀이 되어 과세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으로 간이과세자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해 간이과세자를 점차 줄여나가며 간이과세자 폐지에 앞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간이과세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사업자에도 동일한 과세방법과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의 신고 납부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되어 공평과세와 근거과세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 면제자의 공급대가가 아직도 많이 누락된다고 보기 때문에 면제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간이과세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장치와, 최종소비자를 직접 거래로 하는 소매업 등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근거과세의 기반이 되고 과세의 투명화와 탈세를 방지하여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정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세청(2004), 「국세통계연보」.
- 권오성(2005), “부가가치세의 개선”, 월간조세.
- 김동현, 지용우(200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와 일반과세 일원화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홍익대.
- 김주택외(2006), 「세법원리」, 경영과 회계.
- 박상근(200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월간조세.
- 박성배 배원용(200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탈세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 서희열 김승철(1997),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 서희열(1998),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 안종범(2000), “탈세방지와 부가가치세 정상화”, 월간조세.
- 유일호(1998), “우리나라 탈세규모의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이규섭(2002),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행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만우외(2005), 「세법개론」, 세학사.
- 이철재(2006), 「세법강의」, 세경사.
- 정귀철(200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전북대 경영대학원.
- 최영태(2000), “자영자 소득과약 미룰 수 없다”, 월간조세.
- 현진권(1998),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개편방향”,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 현진권(2000),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평가”,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A Study o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Value Added Tax Law

Ju-taek kim

Abstract

Most countries that use a Value Added Tax(VAT) have exception for special cases with small enterprises who lack the ability to adapt in tax laws. VA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ax.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under VAT was introduced for small business taxpayers to perform tax liability easily and for government and taxpayers to get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using a simple procedure.

The present thesis suggests the conversion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to general taxation as its improvement plan. That is, to abolish simplified taxation system, to convert it into general taxation and to apply the same tax base.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s not only important to realize tax justice, but als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mportant to increase the level of convenience for small enterprise taxpayers and efficiency for tax authorities.

<Key Words> simplified taxation system, VAT